

# 농업희생과 식량주권을 위한 한국교회 정책제안서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신 30:19)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생명과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이다스의 손으로 금은 만들 수 있지만 먹을 것을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먹거리와 환경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은 이를 잊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생명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모아 한국 사회가 나아갈 길을 제안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제안입니다. 이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개정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 5차 바이오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 총회(MOP 5)에서 채택된 「바이오 안전성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대한 책임과 구제에 관한 나고야 쿠파라룸푸르 추가의정서」(나고야 추가 의정서)의 내용에 입각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로 개정해야 합니다.

1) GMO가 생태계나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 수입국은 원인 사업자를 특정하여,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사업자는, GMO의 보유자, 개발자, 생산자, 수출입업자, 수송자 등을 포함한다.

3) GMO 등에서 만들어진 '가공물'도,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된다.

4) 원인 사업자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대신 집행하다.

## 2. 생물다양성보전 전략 수립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당사국들은 생물자원이 재생될 수 없을 정도의 소비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의 이용 및 관리 조치로 2000년 1월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한 의정서를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2003년 9월부터 국제적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의 도입을 유도하고 각종 개발사업이 발생시키는 생물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은 상호 합의된 조건과 사전 통보된 협의에 따르며 그에 따른 기술접근과 기술이전을 공정한 조건으로 각 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3. 지역순환형사회 특별법 제정

식량안보(Food Security)를 지키기 위해 식량주권(Food Sovereignty)과 식량자급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 식량은 근거리 유통이 이루어져야 하고, 2)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건전한 생태계의 지속, 그리고 먹거리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순환 농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하며, 3)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식료자급율을 향상 시켜야 합니다. 지순사는 농(農)을 중심으로 물(水), 의료, 교육, 문화, 에너지, 폐기물 등

지역의 모든 자원들이 자연순환과 사회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사회와 지자체간의 대등한 상호협력과 상호역량의 통합을 구현함으로써 민관협력의 틀을 만들어 지역순환사회의 형성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 내의 물질순환 시스템의 구축과 확립, 지역자금, 지역자립을 토대로 하는 지역순환사회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4. 협동조합법 개정

협동조합을 자발적·자치적·협동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ICA) 100주년 기념 문서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7대 원칙과 2001년의 UN총회 결의 즉, 협동조합에 대한 유엔 권고안(UN Guidelines) 그리고 2002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즉, Recommendation으로 1995년(ICA) 총회 문서를 각국의 협동조합 법률제정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국제법에 대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유엔 가맹국으로서 유엔 총회의 결의사항이나 권고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 총회 문서에 입각하여 협동조합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 5. 교차조건 상호준수(Cross-Compliance) 정책기법 도입

영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에서 실시하는 교차조건 상호준수(Cross-Compliance)란 농업인이 받는 보호와 그들의 규정된 활동을 상호 교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농업보호에 일정한 요건을 교차시켜서, 보호를 받는 농업자의 자격을 한정하고, 생태계·환경보전, 생물 다양성 복원 및 보전, 동물복지의 준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요건의 달성을 의무화 하고, 그 요건 달성에 의해 만들어 진 자격을 갖지 않으면, 보호받을 권리를 얻을 수가 없게 하여 권리에서 자격으로의 방향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6.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준수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합니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격을 농업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뒤서 농지 매수인의 농지 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자유전의 원칙은 헌법상의 권리 일 뿐 아니라 사회적 약속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단지 농업(인)을 보하는 정책을 넘어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 중 하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입니다.

2012년 10월 22일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 기독교대한감리회 농촌선교목회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농민선교목회자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농촌선교  
목회자협의회/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전국목회자 정의평화실천협  
회/ 2012생명평화 기독교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성서한국/ 기독교사  
회운동연대/ 한국교회 생명평화마당/ 한국교회여성연합회